



,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

## 2019년 신전면 종합감사 결과



강진군  
[기획홍보실]

# 2019년 신전면 종합감사 결과

## I 감사 개요

1. 감사기간 : 2019. 05. 08.(수) ~ 05. 10.(금) / 3일간

2. 대상기간 : 2017. 09. 01. ~ 2019. 04. 30. / 2년간

3. 감사반 : 7명

○ 통제관 : 기획홍보실장 운영갑

○ 감사요원 : 6명

- 기획홍보실	감사팀장	이재희
- 기획홍보실	지방행정 6급	이영일
- 기획홍보실	지방시설 6급	김근영
- 기획홍보실	지방행정 8급	이이슬
- 주민복지실	사회복지 6급	양은희
- 친환경농업과	지방농업 6급	맹주재

## II 총 평

### 1. 일반행정분야

- 각종 교육강사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법 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징수하지 않고 지급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매분기 쓰레기 봉투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급 하지 않았으며, 공용차량에 대해서 공용 차량관리의 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서류 등을 비치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하며 세울 행정시스템 차량정비 항목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함.

## 2. 외계분야

- 수입(이자)발생시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는데 불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강진군수입증지 인증기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함에도 지연 불입 하였음.

## 3. 건설 분야

- 각종 공사시 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규정에 의거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 담보책임존속기간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나, 누락된 사실이 있으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시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철거 즉시 보조사업자가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하였으며,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임명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처리하였으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여야 하나 면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일부 청렴서약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4. 복지분야

-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일부 미 제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 마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경로당운영지원지침」에 의거 집행해야 하는데 일부 마을경로당에서 지침을 무시하고 부식비등을 지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5. 농업분야

-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전국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소독제(생석회)를 군에서 수령하였으면 가축방역약품 수불대장에 수입량과 반출량 및 재고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지원한 농가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관리에 미비하였으며, 농번기 여성농어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및 농업인의 삶 제고를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급식 농업인들의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 하기 위해 마을 관련자에게 교육 및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Ⅲ 감사 결과

#### 1. 지적 건 수 : 16건

- 행정상 조치 : 16건(시정 3건, 주의 13건)
- 신분상 조치 : 0건
- 재정상 조치 : 1건 1,770원

#### 2.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천 원)

연번	분 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원)			기타
			시정	주의	계	회수	부과	
계		16	3	13	1	1		
1	행정분야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공제 소홀		○				
2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소홀		○				
3	“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				
4	회계분야	예금이자 수입 미불입	○		1	1		
5	“	인증기 수입정산 관리 소홀		○				
6	건설분야	공사 담보책임존속기간 검토 미흡		○				
7	“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검토 소홀		○				
8	“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사후관리 소홀	○					
9	“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소홀		○				
10	“	예산 집행절차 미 이행		○				
11	“	계약 시 청렴서약서 제출 미 이행		○				
12	사회복지	장애인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		○				
13	“	마을 경로당 운영비 및 부식비 집행 부적정		○				
14	농업분야	2019 구제역 확산방지용 소독제(생석회)관리 소홀	○					
15	“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16	“	2018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업무 소홀		○				

## VI 지적사항 요약

### 1.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공제 소홀

-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당해 경비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출하고, 각종 교육 강사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일정금액 (250천원)을 초과하면 소득세(주민세)를 원천 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17년 10월부터 '18년 12월까지 4건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 2.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소홀

-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수수료감면)에 의하면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해야 함에도 일부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등 쓰레기 봉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3.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 『강진군공용차량관리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중 제5호 서류인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인 새올 행정시스템 차량정비 항목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4. 예금이자 수입 미 불입

- 『지방회계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8년도 발생된 이자를 감사일 현재까지 불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5. 인증기 수입정산 관리 소홀

-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제20조 (계기사용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서 있어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47건을 최고 3일까지 지연 불입한 사실이 있음.

## 6. 공사담보 책임존속기간 검토 미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0조, 시행령 제69조,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하나, 하자담보책임존속기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하자보수보증서 및 하자보수지급각서등을 받은 사실이 있음.

## 7.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검토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1조,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50조, 제70조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 시 계약금액(3천만원 미만)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고,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한규정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나, 하자 보증기간이 누락된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

## 8.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사후관리 소홀

-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에 의거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2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철거 즉시 보조사업자가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2019년 1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9.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소홀

- 『강진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의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한 사업의 추진시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마을 주민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고 공사의 계약 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 공사의 현장을 수시로 확인 부실시공 사항을 발견 또는 부실시공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및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으나, 어관마을 방송시설 정비공사의 9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사업을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음.

## 10. 예산 집행절차 미 이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은 재무관에게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여야 하나, 신전면 공용주차장 기반시설공사의 14건에 대해 본청의 재무관에게 계약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 계약 체결 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



## 11. 계약 시 청렴서약서 제출 미 이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6조의 2항, 시행령 제5조의 2항에 의거 계약 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나, 2017. 9. 1. ~ 2019. 4. 30. 기간에 시행한 송천마을농로확장공사 외 9건에 대하여 계약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청렴서약서를 누락한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12. 장애인증명서 발급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사업 지침』 따르면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다만, 장애인증명을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득히 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예, 의식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7~2019년 감사일 현재까지 33건의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그중에 본인의 4건을 발급하면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를 제출 받아야하나 미제출 받은 사실이 있음.

## 13. 마을 경로당 운영비 및 부식비 집행 부적정

- 『경로당 운영지원 지침』 (전라남도)에 의하면 마을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경로당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성 경비로 공과금, 연료비, 시설유지보수비, 책임보험료 등 필수 경비와 경로당 운영관련 회의 시 소요되는 비용(부식비, 다과, 음료, 소모품비 등), 경로당 운영 소규모 비품 구입 등에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식비는 급식에 필요한 부식비용(식재료, 양념등) 등에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4. 2019 구제역 확산방지용 소독제(생석회)관리 소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검사·주사 또는 투약 등)의 규정에 따라 제1종 법적전염병인 구제역의 전국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환경축산과-5930(2019.1.31.) 호로 구제역 확산 방지용 소독제(생석회)를 수령하였으면, 가축 방역약품 수불대장에 수입량과 반출량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5.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 및 농림사업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69조 규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시설물에 대해 5년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대장을 만들어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7년 농기계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사후관리대장은 작성 비치하고 있으나, 매년 2회이상 농기계 활용실태를 점검하지 않아 보조지원 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6. 2018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업무 소홀

- 농번기 여성농어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및 농업인의 삶 제고를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급식 농업인들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위하여 사업추진기간중 마을대표, 조리원(반찬배달업체 포함) 등 교육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도록[친환경농업과-1293(2018.1.18)] 하였음에도, 농업인들의 위생관리를 위한 마을 대표와 조리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2018년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